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

I 특별위원회 구성

■ 설치목적

- 「지방자치법」제64조(위원회의 설치) 및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37조(특별위원회) 규정에 따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설치됨.
-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는민간의 다양한 규제철폐 제안을 확인하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규제철폐 과제를 점검하며, 자치법규 개정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여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성되었음.

■ 주요기능

- 서울특별시 규제철폐 추진현황 점검
-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특정 정책의 점검 및 제도개선
-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발굴 및 개선

■ 구성경과

- 발 의: 2025.02.03.(김종길 의원 등 28명)
- 구성의결 및 위원선임: 2025.04.30.(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 활동기간: 2025.04.30.~2026.04.30.(기간연장: 2025.11.01.~2026.04.30.)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구 분	성 명	지역구	소속 상임위	소속 정당
위원장		영 등 포 제 2 선거구	주 택 공 간	국 민 의 힘
부위원장		강 서 구 제 5 선거구	교 육	국 민 의 힘
부위원장		중 량 구 제 2 선거구	도시계획균형	더불어민주당
위 원		동 작 구 제 3 선거구	교 통	국 민 의 힘
위 원		강 동 구 제 1 선거구	도시안전건설	국 민 의 힘
위 원		구 로 구 제 1 선거구	도시계획균형	국 민 의 힘
위 원		마 포 구 제 2 선거구	기 획 경 제	국 민 의 힘
위 원		강 남 구 제 4 선거구	환경수자원	국 민 의 힘
위 원		양 천 구 제 2 선거구	도시계획균형	국 민 의 힘
위 원		구 로 구 제 4 선거구	도시안전건설	더불어민주당
위 원		은 평 구 제 4 선거구	교 통	더불어민주당
위 원		비 례 대 표	교 육	더불어민주당

※ 이종배 위원(비례대표, 국민의힘): 의원직 상실에 따른 퇴직(26.3.11.)

II

특별위원회 활동내역

제1차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회의

● 개최계획

- 일 시 : 2025. 4. 30.(수) 16:00
-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안 건 : 위원장 선임의 건

● 개최결과

-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위원별 인사말
-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직 위	위원명	소속 위원회	지역구	소속정당	비고
위원장	김종길	주택공간위원회	영등포2	국민의힘	

※ 인사말: 규제개혁 특별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선임 일정 논의(제2차 회의)
- 참석위원 : 김종길 곽향기 김경훈 김혜지 서상열 소영철 유만희 이종배 허훈 박철성



김종길 위원장



참석위원 전체사진

제2차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회의

● 개최계획

- 일 시 : 2025. 6. 24.(화) 16:00
-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안 건
 1.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소관 규제개혁 관련 업무보고
 3. 현장민원담당관 소관 규제개혁 관련 업무보고

● 개최결과

-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직 위	위원명	소속 위원회	지역구	소속정당	비고
부위원장	김경훈	교육위원회	강서5	국민의힘	
부위원장	임규호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중랑2	더불어민주당	

- 기획조정실은 100일간의 규제철폐 집중 추진을 통해 선정된 136건의 개선 현황과 규제혁신의 상시 정책체계 정착을 위한 '규제혁신기획관' 신설 계획을 보고하였으며, 시의회사무처는 시민제안 발굴 현황과 서울시의회 직원 대상 규제철폐 아이디어 공모 현황을 보고함(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창의행정담당관 현장민원담당관)
- 참석위원 : 김종길 김경훈 임규호 김혜지 서상열 소영철 허훈 박철성 정준호 최재란



회의진행



참석위원 전체사진

제3차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회의

● 개최계획

- 일 시 : 2025. 9. 5.(금) 16:00
-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안 건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변경 현황보고

● 개최결과

- 도시공간본부는 이번 ICAO의 개정안이 기존의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으로, 서울시는 항공 안전을 전제로 현행보다 규제가 강화되지 않도록 자치구 및 국토부와 지속 협의 중이며, ICAO의 항공학적 세부 검토기준 확정 이후 건의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보고함.
(도시공간기획관, 도시계획과장)
-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인근 자치구 간 규제적용의 형평성 문제와 2030년 전면 시행 전 재건축재개발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에 따른 주민 불안감 해소에 대한 대안 마련 등 개선을 촉구함.
- 참석위원 : 김종길, 김경훈, 임규호, 서상열, 소영철, 이종배, 허훈, 정준호



김종길 위원장



회의진행

제4차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회의

● 개최계획

- 일 시 : 2025. 12. 16.(화) 10:30
-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안 건 : 옥외광고물 규제 관련 업무보고

● 개최결과

- 디자인정책관은 간판 바탕색 제한 삭제, 가로영상문화시설 광고 허용 확대 등, 서울시의 규제철폐 추진현황과 가로형 간판 설치 층수 완화, 입체형 간판 크기 확대, 대형 디지털 광고물 설치 예외 기준 조정,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 이중규제 개선,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 적용, 정당현수막 관련 법령 개정 동향 등 민원 사항을 검토하여 보고함(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규제혁신기획관 창의규제담당관)
-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자치구별 정당현수막 단속 기준의 형평성 문제, 광화문 일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 구역의 디자인 기준 및 조도 관리 강화, 집회 관련 현수막의 장기 방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 등 개선을 촉구함.
- 참석위원 : 김종길, 김경훈, 곽향기, 김혜지, 서상열, 소영철, 유만희, 허훈, 최재란



김종길 위원장



회의진행

제5차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회의

● 개최계획

- 일 시 : 2026. 4. 20.(월) 13:30
-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안 건
 1. ICAO 국제기준 발효에 따른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의 합리적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2.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개최결과

-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제3차 회의에서 논의한 ICAO 국제기준 변경에 따른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문제와 관련하여, 항공안전을 전제로 하되 현행보다 규제가 강화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며 「ICAO 국제기준 발효에 따른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의 합리적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함.
- 아울러 2025년 4월 30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의 특별위원회 활동 전반을 정리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심의채택하고, 규제철폐 추진현황 점검,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대응, 옥외광고물 제도개선 등 그간의 주요 활동 성과를 확인하였음.
- 참석위원 : 김종길, 김경훈, 곽향기, 김혜지, 서상열, 소영철, 유만희, 정준호



김종길 위원장



참석위원 전체사진

III

특별위원회 향후 계획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후 계획

- 규제개혁은 단순한 행정적 시정조치를 넘어, 조례의 제·개정과 상위법령 개정 건의 등 입법적 준비를 수반하는 복합적 과제임. 이에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 전반에 걸친 폭넓은 검토와 함께, 자치입법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심층적인 정책 논의가 지속적으로 요구됨.
- 본 특별위원회는 「ICAO 국제기준 발효에 따른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의 합리적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발의를 비롯하여 다양한 제도개선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이러한 성과가 일회성 논의에 머물지 않도록 의회 차원의 상시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나갈 것임.
- 아울러 규제철폐가 새로운 피해와 부작용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안전·환경 등 공익적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며 규제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도시 경쟁력 강화에 있는 만큼, 앞으로도 시민·전문가·집행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서울시 규제개혁이 실효성 있는 성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이어나갈 것임.

붙임 1. 보도자료 4부.

2. 규제개혁 업무보고 각 4부.

3. 건의안(위원회안) 1부. 끝.

붙임 자료

붙임1. 보도자료

1.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발족
2. 부위원장 선출 후 업무보고 실시
3.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 실시
4. 옥외광고물 규제개선 성과 점검 및 제도 전환기 관리방안 논의

붙임2. 업무보고자료

1. 기획조정실 규제철폐 추진 관련 업무보고
2. 현장민원담당관 규제철폐 공모 관련 업무보고
3. 도시공간본부 소관 규제개혁 관련 업무보고
4. 디자인정책관 옥외광고물 규제 관련

붙임3. 촉구 건의안

2025. 5. 1.(목)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건강속으로
시민결연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길	02) 2180-8356

사진 없음 사진 있음 매수 : 2매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발족

-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종길 의원 선임
- 김종길 위원장, “서울시의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규제철폐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

-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선출됐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수) 제1차 회의를 열고, 특별위원장을 선출하며 특별위원회의 시작을 알렸다.
- 규제개혁 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종길 위원장은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규제는 물론, 서울시 미래 설계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시도가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규제철폐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편, 이날 구성된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에는 김종길 위원장을 포함하여 소영철(국민의힘, 마포2), 유만희(국민의힘, 강남4), 이종배(국민의힘, 비례), 김혜지(국민의힘, 강동1), 서상열(국민의힘, 구로1), 허훈(국민의힘, 양천2), 곽향기(국민의힘, 동작3), 김경훈(국민의힘, 강서5), 박철성(더불어민주당, 구로4),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은평4), 임규호(더불어민주당, 중랑2), 최재란(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 등 총 13인으로 구성되었다.

- 앞으로,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에서는 서울시의 규제철폐 상황 점검, 규제철폐안의 적정성, 관련 조례의 제·개정, 신규 규제개혁 과제 발굴 등의 역할을 맡게 됨에 따라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 6. 25.(수)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건강속으로
시민결의로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길	02) 2180-8356

사진 없음 사진 있음 매수 : 2매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김경훈, 임규호 부위원장 선출 후 업무보고 실시

- 김경훈 부위원장,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는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길 것”
- 임규호 부위원장, “이념과 계파를 뛰어넘어 실용적인 규제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

-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는(위원장 김종길, 영등포2) 지난 6월 24일(화)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김경훈(국민의힘, 강서5), 임규호(더불어민주당, 종량2) 의원을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관련 업무를 보고받았다.
- 이날 선출된 김경훈 부위원장은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는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으며, 임규호 부위원장은 “이념과 계파를 뛰어넘어 실용적인 규제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시 기획조정실로부터 ‘서울시 규제철폐 집중 추진에 대한 성과’를 보고 받았으며, 서울시의회 현장민원담당관은 규제철폐 사업(규제없소) 및 직원제안 사업의 진행사항을 설명했다. 보고 이후 위원들은 질의를 통해 정책의 실행력과 효과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 위원들은 “변화와 기본 사이에 균형감 있게 운영되길 바란다”, “시대 변화에 따른 개선 중심으로 추진하자”고 제언하며, 서울시 규제철폐 사업에 대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참여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단순 혜택의 확대 및 역차별 논란이 없도록 신중하고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 김종길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규제철폐의 효과성에 대해 시민들이 체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위원회 목표와 개혁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2025. 9. 8.(월)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건강속으로
시민결연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사진 없음 사진 있음 매수 : 2매

위원장	김종길	02) 2180-8356
전문위원실	전문위원	02) 2180-7687
	입법조사관	02) 2180-7691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 실시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변경 현황과 서울시의 대응 준비 상황 보고 받아
- 김종길 위원장, “김포공항일대 항공안전운항 확보와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연 등 불확실성 최소화 필요”

-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길, 영등포2)는 지난 9월 5일(금)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기획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변경 현황과 그에 따른 김포공항 일대의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 및 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 등이 논의됐다.
- 규제개혁 특위위원들은 김포공항일대 고도제한으로 인해 장기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시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며, 국제기준 개정에 맞춘 합리적 규제 완화와 도시공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또한, 개정된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은 2030년 11월 전면시행 전 국내 공항별 기준 마련을 거치게 되어 있는 만큼 서울시의 철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을 요청했다.

- 이에 김종길 위원장은 “국제기준 변경 발효에 따라 항공 안전운항을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서울시와 관계 기관은 이번 공항고도제한 변경이 시민들에게 규제 강화로 느끼지 않도록 체감도 높은 대응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도시공간본부를 비롯한 집행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불합리한 규제 해소 △도시 경쟁력 강화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2025. 12. 16.(화)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건강속으로
시민결의로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사진 없음 사진 있음 매수 : 2매

위원장	김종길	02) 2180-8356
전문위원실	의안심사 지원팀장	02) 2180-7687
	입법조사관	02) 2180-7691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옥외광고물 규제개선 성과 점검 및 제도 전환기 관리방안 논의

- 정당현수막 등 법·조례 개정사항 점검, 선거 국면 현장 혼선 대응체계 집중 논의
-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도시경관·시민안전의 균형 전제로 제도개선 지속

-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길, 영등포2)는 12월 16일 (화)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 이번 회의에는 규제철폐를 업무를 담당하는 규제혁신기획관(창의규제담당관)과 옥외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는 디자인정책관(도시경관담당관)이 참석하여 옥외광고물 규제철폐 추진현황과 주요 민원사항 검토내용을 보고했으며 이어서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 이날 보고에서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자치구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추진된 규제철폐 사례로 △ 간판 바탕색의 적색류·흑색류 사용비율 제한 규정 삭제, △ 가로영상문화시설 광고물 표시 허용 범위 확대, △

소상공인이 주로 사용하는 금속 입간판 합법 신고가 가능하도록 재료 규제 완화를 포함한 5건에 대한 추진현황이 보고됐다.

- 아울러 위원회는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정되는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의 주요 변경사항을 점검하고, 정당현수막 등 제도 변화가 현장과 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광고물 철거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자치 구별 철거 시기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옥외광고물 자유 표시구역 내 대형 광고물 설치에 따른 빛 공해 기준 마련 등 생활 불편 요소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김종길 위원장은 “선거를 앞두고 정당현수막 등 옥외광고물 관련 제도가 변화하는 만큼, 시민 안전과 불편 최소화를 전제로 집행기준의 명확화와 현장 혼선 방지가 중요하다”며, “옥외광고물 규제개선은 소상공인 등 현장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도시경관과 시민 안전의 균형을 전제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집행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정비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2. 업무보고 4부

1. 기획조정실 규제철폐 추진 관련 업무보고

동행·매력
특별시서울

제 2 차 규 제 개 혁
특 별 위 원 회

SE♥UL M! SOUL

주요 업무 보고

2025. 6. 24.

기 획 조 정 실

기획조정실

① 규제철폐 집중 추진 성과

② 규제 전담 조직 '규제혁신기획관' 운영 방안

※ (참고자료) 규제철폐 발표 안건 목록 (1~136호)

1 규제철폐 집중 추진 성과

기획담당관 : 김형래 ☎2133-6610 기획조정팀장 : 유승현 ☎6612 담당 : 송서현 ☎6614

□ 집중 추진기간 운영성과 ('25.1.3.~4.12.)

- 운영목적 : 민생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필요성에 따라, 전 실국이 참여하는 100일 집중 추진기간 운영
- 주요성과 : 총 129건의 규제개선 추진과제 발표 및 이행
 - (제안발굴) 시민, 공무원 제안, 실·국 현장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로 총 2,541건 발굴

(시 민)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 창구, 대토론회, 규제개혁 신문고 등 100일 규제 집중신고제를 통해 총 1,006건 발굴

(쫑직원) 규제혁신 우수 창의 제안 선정을 통해 총 753건 발굴

(市·자치구·투출기관) 市 분야별 TF, 자치구, 투출기관 참여로 총 782건 발굴

- (심의·검토) 서울연구원, 민간전문가가 함께 원점에서 안전을 검토하여 신속성·전문성을 바탕으로 총 157건 심사 권고안 확정

(신속성) 규제접수 즉시 검토 → 심의 → 최종 결정 단계를 통해 규제철폐 실행력 강화

(전문성) 민간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종합적 시야에서 규제철폐 추진 과제 선정

- (추진과제 선정) 시민불편 해소, 행정절차 간소화, 창업·일자리 제약 해소 등 체감도 높은 규제개선 사례 다수 도출, 총 129건의 규제철폐(안) 발표

< 규제철폐안 주요 내용 >

(1호)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폐지 및 완화 → 상가 공실 예방효과

(5호) 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 → 소상공인 판로 활성화

(74호) 입간판 재료 규제 완화 → 소상공인의 비용부담 완화

(93호) 초등 긴급일시돌봄 제공시설 선정조건 폐지 → 돌봄공백해소, 육아환경개선

(94호) 시장정비사업 허용대상 확대 → 개발사각지대 해소 및 도시환경개선

□ 규제철폐 지속 추진계획 ('25.4.13.~6월 현재)

① 시정 전 분야 규제 발굴·발표 지속(시민, 직원)

- 시민 체감도 높은 규제 안건 발굴을 위해 시민 제안 지속 접수 중
 - (신고·제안)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창구, 규제개혁신문고
 - (검토방향)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규제는 분야와 상관없이 모두 검토
- 안건심의 및 대외 발표 절차 운영
 - (안건심의) 민간 전문가 자문을 통해 규제개선안 실현가능성, 실효성 보완
 - (대외발표) 규제성과는 보도자료, 스마트서울뷰 공개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유

※ 130~136호 총 7건 추가 발표

< 규제철폐안 주요 내용 >

- (131호)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 (서면동의 → 서면동의+전자서명)
- (132호) 시립청소년센터 수영장 여성 이용료 감면 연령 완화 (13세 → 9세)
- (133호) 화재·폭발 등 대형 재난사고의 경우 시-자치구 안전보험 보장 항목 중복 허용

② 지자체 규제철폐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거버넌스 기반 마련 ('25.6.~7.)

- 규제 전담 조직 '규제혁신기획관' 신설 (7.1.字)
 - 실·국, 산하기관 규제에 대해 「규제발굴 → 평가·개선 → 관리」 순 과정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규제총괄관(민간전문가) 위촉하여 민간의 시각에서 실행력 있는 규제 합리화 방안 및 운영의 실효성 제고
- 지속가능한 규제철폐 추진 기반으로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
 - 타 시·도 및 규제 연구기관과 협업을 통해 정부 건의 제도개선 과제 공동 발굴
 - 정부, 연구원, 타 지자체 규제개혁위원회 등과 협약 체결 추진('25. 하반기)
 - ▶ (정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 (학계) 한국규제학회, 시도 연구원협의회 등

2 규제 전담 조직 '규제혁신기획관' 운영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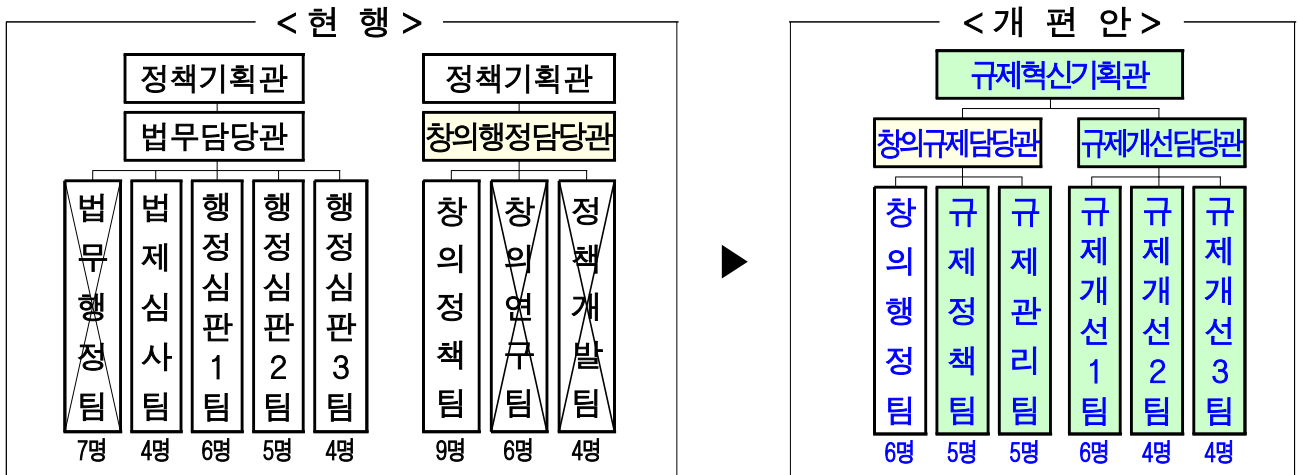
창의행정담당관 : 임국현 ☎2133-7760 창의정책팀장 : 이윤지 ☎7761 담당 : 이한울 ☎7763

□ 추진 배경

- 규제혁신을 상시 과제로 전환하고 일상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수요 증대
- 총괄적 규제관리 체계 마련 및 중앙정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필요
- 그림자규제·행태규제 등 비법령 규제에 대한 발굴·관리 사각지대 존재

□ 조직구성

- '규제혁신기획관(3급)' 신설, 행정 전반에 걸친 규제조정 및 개혁 총괄
 - 법무담당관의 규제 심사·등록, 창의행정담당관의 제안·정책 기능을 창의규제담당관으로 재편하고, 현장 중심 규제발굴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담당관 신설



【 부서별 주요 업무 】

구분	담당업무
창의규제 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행정 기획 및 과제발굴, 규제정책 수립, 규제 사전심사, 법령 등 제도개선 발굴·관리, 성과관리 및 우수사례 확산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규제총괄관 제도 운영 등
규제개선 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중심 분야별 규제 발굴·개선 추진, 갈등 진단 연계 운영 - 경제·산업, 도시계획·건설·안전·교통, 생활·환경·복지·문화 분야

□ 주요 업무내용

- 창의행정과 규제혁신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규제 개념 정립
 - 시민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하는 창의행정의 개념을 규제혁신과 연계, 법령뿐 아니라 내부지침·관행 등 비법령 규제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
 - 직원들이 규제 개념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 개념 체계 마련
- 시민·직원·전문가가 함께하는 규제 발굴체계 구축
 - 창의제안, 민원 분석 등을 통한 내부 직원 주도 상시 발굴체계 마련
 - 시민, 외부기관, 전문가 등 참여 가능한 현장 중심의 다양한 발굴 채널 운영
 - 중앙정부, 자치구, 시의회와의 협업 강화로 과제발굴과 제도개선을 연계
- 다양한 분야의 규제혁신 과제 검토 및 효율적 관리 시스템 마련
 - 자치법규 외 그림자 규제 등 비법령 규제까지 포함하는 등 관리범위 확대
 - 규제 유형 및 추진 단계별 검토 기준 마련 등 체계적 관리
 - 규제 총괄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효율적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정보 통합관리
- 규제혁신 인센티브 마련 및 성과 확산
 - 창의행정 보상과 연계하여 규제혁신 기여 공무원·기관에 포상금 등 지급
 - 규제혁신 매뉴얼 제작·배포, 규제 성과공유를 위한 토론회·포럼 개최
 - 시·자치구·투출기관을 대상으로 규제 관련 온·오프라인 교육 확대 운영

□ 향후 일정

- 지속 가능한 규제혁신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TF 운영 : ~'25. 6.
 - 외부전문가 및 내부공무원 구성, 규제혁신 프로세스(발굴~실행) 등 논의
- 규제혁신기획관 조직 신설 : '25. 7. 1.
- 2025년 규제혁신 추진계획 수립 : '25. 7.~

참고자료	규제철폐 발표 안건(1~136호)
------	---------------------------

구 분	규제철폐안	주요 내용	담당부서
1호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기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 비율을 연면적 20%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의 용적률 10% (개선) 상업지역 비주거시설 비율 10%, 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 폐지 일반·근린상업지역 내 임대주택·공공기숙사 도입 시 단일 공동주택 허용	도시계획과
2호	환경영향평가 본안평가 면제 대상 확대 및 심의 간소화	(기존) 본안평가 협의절차 면제대상을 정비사업 면적 9만~18만㎡, 건축물 연면적 10만~20만㎡로 제한 (개선) 본안평가 협의절차 면제대상 제한 규정 삭제, 환경영향평가 항목 간소화(타 심의 중복항목 개선)	친환경건물과
3호	높이규제지역의 무공공기여부담 완화	(기존) 높이규제지역은 지역은 종상향 시 법적 최대 용적률 확보 불가능함에도 다른 지역과 똑같이 공공기여 부담 (개선) 높이규제지역의 종상향에 따른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해 적용	주거정비과
4호	통합심의에 소방성능·재해분야 포함	(기존)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련 심의 9개 분야 중 7개 분야(건축, 교통, 환경 등)만 통합심의 (개선)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성능위주 설계평가와 재해영향평가 심의 포함	주거정비과
5호	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	(기존) 도시공원 내 상행위 허용 근거 부재 (개선) 공원 내 문화·예술 행사 개최 시 상행위 허용 (조례 개정)	정원도시정책과
6호	입체공원 정비사업시 의무확보 공원 인정 (입체공원 제도 도입)	(기존) 대규모 정비사업 관련 공원 확보 의무를 평면적 기부채납 방식으로만 제한 (개선) 도시 기능의 복합화, 보행 및 녹지 연결 등 입체적 활용이 필요한 지역 등에 입체복합공원도 의무확보 공원으로 인정	시설계획과
7호	서울 매력 일자리 중장년 참여자 연령 상한 폐지	(기존) 참여연령 만 40세 이상~만 65세 미만 (개선) 참여연령 만 40세 이상 ** 상한 폐지	일자리정책과
8호	돌봄SOS 서비스별 상한 기준 폐지	(기존) 1인당 서비스별 연간 이용한도 제한 * 일시재가60시간, 단기시설14일, 동행지원12회, 식사배달 30식 (개선) 1인당 서비스별 연간 이용한도 폐지	돌봄복지과

구 분	규제철폐안	주요 내용	담당부서
9호	전 입 신 고 서 류 일 원 화	(기존) 자치구별 전입신고시 제출자료 상이 (개선) 자치구별 전입신고시 제출서류 간소화 가이드라인 마련	자치행정과
10호	행정재산 사용허가 부 당 특 약 방 지	(기존) 공유재산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 조항 변경 사용 가능함에 따라 수허가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 발생 (개선) 행정재산 사용허가 시 부당한 조건 부여 불가 조항 명확화하여 부당특약 사전 방지	재산관리과
11호	온 누 리 상 품 권 사 용 처 확 대	(기존) 전통시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영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 불가 (개선) 전통시장에 해당하지 않는 영세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상권활성화과
12호	관 광 숙 박 시 설 용 적 를 완 화	(기존) 준주거, 상업지역 관광숙박시설 용적을 1.2배까지 완화 (개선) 관광수요가 높은 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용적을 1.3배까지 완화('24.5. 조례 개정) 사항에 대해 관광숙박 특화 세부 기준 수립하여 9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용적률 완화 반영	도시관리과
13호	건 설 공 사 50% 직 접 시 공 의 무 화 폐 지	(기존) 원도급사 50% 이상 직접 시공 의무화, 주요 공종 원도급사 100% 직접시공 추진 (개선)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폐지 후 입찰 시 직접시공 평가기준 우선 적용(20% 만점)	건설혁신담당관
14호	도심지 특성 고려한 적 정 공 사 비 반 영	(기존) 공공공사비 산정시 도심지 특성 반영 부족 (개선) 도심지 및 공사현장 여건을 고려한 공사비 할증 반영, 발주부서 역량강화를 위한 원가교육 및 컨설팅 실시 등	계약심사과
15호	교 통 정 리 원 보 험 료 등 법 적 경 비 반 영	(기존) 건설 현장 필수 인력인 교통정리원 법정경비 미반영 (개선) 건설 현장 교통정리원의 법정 경비 공사비(안전관리비) 반영	계약심사과
16호	정 보 화 사 업 심 의 제 도 개 선	(기존) 정보화사업 추진시 다수의 유사 중복심사로 발주기간 과다 소요, 업무 부담 증가 (개선) SW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일원화, 상용SW구매사업 중복심의 일괄 추진	정보시스템과 계약심사과
17호	공 유 재 산 심 의 절 차 개 선	(기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 10억,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5억으로 기준가격 현실화 필요 (개선)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 40억, 심의회 심의대상 10억으로 기준가격 상향	재산관리과

구 분	규제철폐안	주요 내용	담당부서
18호	계약심사 대상 및 기준 현실화	(기존) 계약심사제도 도입('06) 이후 물가 상승에도 계약심사대상 기준 금액은 20년간 변동 없이 유지 (공사 5억이상, 용역 2억 이상, 물품 2천만원 이상) 됨에 따라 기준 금액 현실화 필요 (개선)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 대상 사업 발굴·확대 및 계약심사 대상 기준금액 상향 건의	계약심사과
19호	기후예산 운영 개선	(기존) 기후예산 대상사업 선정·분류를 사업부서에서 담당하여 행정부담 증가 (개선) 기후예산 총괄부서에서 선정·분류하여 통보	기후환경정책과
20호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 대상 확대	(기존) 서울시 거주자 및 서울시민 동반 경우에만 이용 (개선) 서울에서 생활하는 직장인 등 포함, 비거주 서울생활인구도 키즈카페 이용 가능	아이돌봄담당관
21호	창업지원시설 입주 절차 간소화 등	(기존) 창업지원시설별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양식이 달라 신청시 매번 새로 작성해야하는 등 기업 부담 발생, 초기 창업기업 대상시설은 매출 또는 투자 20억 초과시 입주신청 제한 (개선) 입주서류 간소화(시설별 공통양식 도입), 초기 창업기업 입주신청시 매출·투자 금액 상한 규정 삭제	창업정책과
22호	공공시설 이용시간 연 장	(기존) 노인, 청소년 생활밀착형 시설 운영시간 제한 - 시립노인종합복지관 평일 9-18, 토요일 9-13 - 서울시글로벌청소년센터 평일 9-18, 주말 휴무 (개선) - 시립노인종합복지관 토요일 18시까지 이용시간 확대 -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토요일까지 운영 확대	어르신복지과 다문화담당관
23호	불합리한 건축심의제도 개선	(기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중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인해 일부 자치구의 임의 확대 운영사례 발생 (개선) 심의대상을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 공고한 사항으로 한정하는 등 심의대상 명확화	건축기획과
24호	단가계약 급수공사 작업 지시 건별 도급액 제한 완화	(기존) 혼탁수 등 긴급한 민원 해소를 위한 관로공사 도급금액 20백만원으로 제한 (개선) 건설원가 상승 등 고려 도급금액 30백만원으로 상향	급수설비과
25호	상수도 단가계약공사 설계변경 기준 완화	(기존) 상수도 단가계약공사의 경우 계약금액 10% 이상 증액시 신규사업으로 재발주 (개선) 예상치 못한 수질사고 등 노후관 조기 정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급비 70% 이상 증액시에 재발주하도록 2025년에 한하여 한시적 완화	안전조사과

구 분	규제철폐안	주요 내용	담당부서
26호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확대	(기존)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대상 연령 3~5세 (개선) 지원대상 연령 0~5세로 전 연령 확대	영유아담당관
27호	다문화가족에 대한 임신부 교통비 신청 서류 간소화	(기존)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신부 신청서류 3종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개선) 신청서류 2종으로 축소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제출 서류에서 제외	저출생담당관
28호	차량진출입로 (승차구매점포함) 설치시설 요건완화	(기존) 차량진출입로 포장설치 기준관련 자재요건 상이, 승차구매점 진출입로 볼라드 의무설치 (개선) 모든 진출입로에 동일 자재 사용하여 도로 파손시 보수비용 부담 완화, 승차구매점 유효도로폭 2m 이내 구간은 이동약자 보행불편 고려 볼라드 설치 제외 가능	보행환경개선과
29호	수의 방법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대상명확화	(기존) 법에서 위임한 수의계약 허용범위를 제한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입법 미비 발생 *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의방법 사용허가 가능한 규정 없음 (개선) 재산의 성질상 일반입찰이 곤란한 경우, 행정재산 사용허가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	재산관리과
30호	위원회의 불필요한 심의 절차 및 운영 방식 간소화	(기존) - 공공미술위원회 : 신규·기존작품 대면심사만 진행 -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 심의기간 40일 - 국가유산위원회 : 분과별 개최시기 고정(월1회, 격월1회, 분기별1회)으로 탄력적 심의 불가 (개선) - 공공미술위원회 : 기존작품 이전, 철거, 변경의 경우 서면, 자문방식으로 개선 -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 심의기간 30일 - 국가유산위원회 : 분과별 소위원회 활용하여 개최주기 단축	디자인산업담당관 문화유산보존과 산업입지과
31호	서울디자인재단 민간 계약체결 제출서류 간소화	(기존) 민간기업 계약체결시 제출서류 9종 (개선) 제출서류 통합하여 1종으로 간소화	서울디자인재단
32호	사회적 고립 가구 개문손상비보전체계마련	(기존) 스마트안부확인서비스 이용시민 중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 112, 119에서 손실보상비 미지급 (개선) 이용시민이 취약계층임을 고려, 귀책유무와 관계없이 112, 119 미지급분 확인시 차액 지급	서울시복지재단 고립예방센터
33호	제2·3종 일반주거내소규모건축물, 법적상한용적률까지한시허용	(기존) 2종일반주거지역 법정상한용적률 200% 3종일반주거지역 법정상한용적률 250% (개선) 2종일반주거지역 법정상한용적률 250% 3종일반주거지역 법정상한용적률 300%, 3년간 한시적 완화	도시계획과

구 분	규제철폐안	주요 내용	담당부서
34호	수목 중심의 일률적 바이오톱 1등급 토지 지정 기준 개선	(기존) 수목 중심의 일률적 바이오톱 1등급 지정 (개선) 바이오톱 경계 및 등급 산정 시 대지조성 이력, 산림·수목 조성 이력, 필지의 바이오톱 1등급 저촉면적, 지적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및 고려하여 경계 구획 기준 마련	시설계획과
35호	정비사업 준주거지역 종상향 적극 추진	(기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관련 원칙만 제시 (개선)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적용대상 및 종상향 범위 등 구체화 하여 강북 등 역세권 정비구역 준주거 종상향 활성화	주거정비과
36호	재정비촉진사업 용적률·공공기여·주거비율 완 화	(기존) 사업성 낮은 재정비촉진사업장 인센티브 제한 * (예) 공공기여기준 10%이상, 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 5% (개선) 인센티브 확대 및 용적률 체계 전면개편 - 용적률체계 개편을 통해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용적률 최대한도 확대 (역세권 + 비역세권), 국토계획법 용적률 × 1.2배 이하 (지구별 여건 고려)) - 순부담률 : 일률적 기준(10%) 폐지(기반시설 충분시) - 준주거지역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도시정비형 재개발)	재정비촉진과
37호	정비사업 기부채납 건축물 고밀복합화	(기존) 정비사업 등 개발사업 추진시 기부채납 시설의 독립적 운영관리를 위해 개별부지에 각각의 공공시설 확보 (개선) 주거·복지·문화시설 등 건축물 기부채납 시 단일 건축물로 복합화(고밀개발) - 공공시설+공공기숙사, 부대·복지시설+공공시설 등	주거정비과
38호	교통영향평가 처리기간 단축	(기존)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2건 이상 접수시 개최하고, 평균 3개월 소요 (개선) 1건 접수시에도 개최, 경미한 변경은 서면심의 등 탄력적 절차 운영	교통정책과
39호	중·소규모 건축심의 면제대상 완화 및 매입임대 확대	(기존) 비아파트 공급여건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부재 (개선) 심의대상 및 이격거리 완화, 매입임대 확대 및 사업자 지원 강화 - (심의대상) 공동주택/오피스텔 20세대 → 30세대, 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 → 50세대(건축허가대상에 한함) - (이격거리) 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형) 대지안의 공지 규정 2m (30세대 미만에 한함) → 2m (세대수 무관) - (매입물량) 2,019호('24년) → 5,000호('25년) - (대금초기 지급비율) 약정금 40%, 계약금 20%, 잔금 40% → 약정금 50%, 계약금 30%, 잔금 20% - (금융지원) HUG 융자 지원시 (당초) SH 참여 제외 → (개선) SH 참여 가능 ※ 융자대상 : 사업규모 20호 이상	건축기획과 임대주택과

구 분	규제철폐안	주요 내용	담당부서
40호	전면 재개발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역 정비 활성화 지원	(기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단독, 다가구, 다세대가 밀집한 노후, 불량 저층 주거지역 인센티브 부족 (개선) 소형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후·저층 주거지역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등) 및 생활기반시설 조성(마을주차장 등) 등 인센티브 부여	주거환경개선과
41호	입주대상별 민간임대 주택 간 통합 및 복합건축 허용	(기존) 유사사업 개별 추진으로 특정 주택의 공급물량 쏠림 현상 발생 (개선) 개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년, 어르신, 신혼부부 안심주택, 임대형기숙사를 통합 및 복합개발 할 수 있도록 조례 및 기준 제정 *공공기여량 및 비주거비율 한시(3년) 완화 등	전략주택공급과
42호	발코니 확장 규제 완화	(기존) 발코니 확장면 싱크대, 가스 설비 금지, 최소 유효폭 0.8m 확보 필요 (개선) 발코니 확장면 설비 설치 허용, 유효폭 기준 폐지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가이드라인 폐지)	건축기획과
43호	유형별 공사비 가이드라인 마련 등 계획 단계부터 적정공사비·공사기간 관리	(기존) 설계단계부터 적정공사비 및 공사기간 반영, 공사유형과 규모에 따른 공사비 가이드라인 부재 (개선) 설계 등 용역 발주시 과업내용서에 공사비 및 공사기간 검토에 대한 관련 기준 명시, 과소 산정하지 못하게 명문화	기술심사담당관
44호	간접공사비 지급기준 마련 및 주휴수당 적정 지급	(기존) 장기계속공사 간접비 부담 문제로 소송사례 다수 발생. 발주 당시 불확실한 주휴수당 PS단가로 계약 (개선) 장기계속공사 간접비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업무절차 및 지침 정비, 주휴수당은 잠정적(PS단가)으로 계약 후, 준공 시 노무비에 포함하여 정산	건설혁신담당관
45호	기술용역 추가과업 적정 대가 지급 및 건설사업관리 대가 현실화	(기존)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과업 발생 빈번하나 예산 부족으로 비용이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 직접경비 내역에 주재비 제외하고 용역비 산출 (개선) 추가과업 대가 지급을 위한 기준 정리·전파,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시 주재비 반영 확인	기술심사담당관
46호	대규모(기술형 입찰) 공사 입찰안내서 등 관행적 불합리 철폐	(기존) 입찰안내서에 관행적 계약조건 적용으로 인허가 관련 비용 등 전가 사례 발생 (개선) 입찰안내서 체크리스트 작성 및 활용방침 수립 후 입찰안내서 심의시 적용	기술심사담당관

구 분	규제철폐안	주요 내용	담당부서
47호	건설현장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합리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자 배치기준과 같이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완화 필요 (개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여건 및 체계 실태조사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등에 대한 연구·검토를 통해 품질관리 체계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 서울연구원 협업 추진	건설혁신담당관
48호	건설현장 중복점검·불필요행정 업무 간소화 및 근무환경 개선	(기존) 주요 공사장 서울시-외부기관 중복·반복 점검, 불필요한 행정서류 제출, 열악한 공사장 근무환경 (개선) - (oneday 안전점검) 주관·협조부서, 외부전문가, 비상주 감리원이 같은날 안전점검 시행 - (불필요한 행정서류 축소) 현장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불필요 행정업무 간소화 - (환경개선) 공사 설계단계부터 근로자 편의시설을 의무 반영하여 적극 확충하고 주기적 점검 시행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관리과 토목총괄과 토목1과
49호	선제적 예방 중심으로 불법하도급 관리 강화	(기존) 불공정 하도급 행위 선제적 예방활동 시행 (개선) 공사관계자의 하도급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홍보·민관협력 등 피해 발생 전 다양한 불법하도급 예방활동 강화	건설혁신담당관
50호	건설근로자 임금 직접 지급 대상 확대 (간접근로자 포함)	(기존) 간접근로자의 경우 임금 직접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임금체불 가능성 존재 (개선) 간접근로자(교통신호수, 장비유도원 등) 임금도 발주기관에서 직접 지급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하여 임금 체불 예방(사전컨설팅 등을 통해 제도개선 추진)	건설혁신담당관
51호	공공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기존) 서울시는 발주 시 입찰공고문에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현장 적용 미비 (개선)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교육을 강화 및 이행 여부 점검	건설혁신담당관
52호	10억원 미만 용역에 가격입찰 후 PQ평가 적용 확대	(기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 선정 시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 가격입찰 가능함에도 서울시는 선입찰 방식 미적용 (개선) 선가격입찰 방식 적용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변경 및 계약절차 개선 추진	기술심사담당관
53호	설계의도구현 용역 수의계약 적용	(기존) 법령상 설계자와 계약해야 하는 설계의도구현 용역은 수의계약 적용 가능함에도 일부부서 미적용 (개선) 발주부서에 '설계 의도 구현 용역'은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함을 안내	재무과

구 분	규제철폐안	주요 내용	담당부서
54호	타 시·도 보증기업 보증 제한 완화	(기존) 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잔액 있는 경우 신규 보증 지원 제한 (개선) 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잔액이 있더라도 총 지원한도에서 해당 잔액을 차감 후 신규 보증 가능하도록 제한 완화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부
55호	서울신용보증재단 계약서류 간소화	(기존) 계약서류 7종, 대면 제출 원칙, 1천만원 이상 계약 건만 비대면 전자 제출 (개선) 계약서류 1종 통합, 모든 계약서류 비대면 제출 가능	서울신용보증재단 경영지원부
56호	가락시장·강서시장 임대 소상공인 보증금 납부 방식 개선	(기존) 임대계약시 보증금 현금 납부 원칙, 특정 조건시에만 보증보험으로 대체 가능, 현금 납부 비율 20~100% (개선) 모든 임차인이 보증보험으로 보증금 납부 가능, 현금 납부 비율 10%로 하향 조정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업본부
57호	서울가족플라자 임대 매장 운영 계약조건 개선	(기존) 소규모 임대매장 계약시 판매품목 및 가격제한, 관리감독 명목으로 불필요한 서류 제출 (개선) 판매품목 및 가격 자율 결정, 운영관련 제출 서류 최소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공간운영실
58호	서울 지하철 상가 운영 규제 개선	(기존) 상가임대료 연체율 9.23%, 상가업종 변경 승인제, 다수 상가 일괄 임대차 계약은 일괄 갱신·해지만 가능 (개선) 상가임대료 연체율 6%, 상가업종 전환 신고제로 전환, 다수 상가 일괄 임대차 계약 시 부분 해지 허용	서울교통공사 상가광고처
59호	옥외광고물 적색류, 흑색류 사용 제한 폐지	(기존) 옥외광고물 조례(제2조3항4호)에서 광고물 바탕색을 적색류·흑색류의 사용을 2분의 1(50%) 이내로 제한 (개선) 조례상 제한 규정 삭제하여 자영업자들의 표현의 자유 보장	도시경관담당관
60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규제 개선	(기존) 옥외광고물 조례(제10조1항2호)에 가로영상문화시설은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에 한정한다'는 단서 조항 존재 (개선) 조례상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가로영상문화시설 설치시 자치구간 형평성 제고	도시경관담당관
61호	창문 이용 광고물 규제 완화	(기존) 옥외광고물 조례(제17조2항2호)에 창문이용 전광류 등 사용을 '상업지역 건물 1층'으로 제한 (개선) 조례상 제한 규정 삭제, 창문 이용 전광류 등은 상업지역,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건물 2층 이내 설치 가능	도시경관담당관
62호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연장 대상자 확대	(기존) 서비스 연장 대상자(12개월 지원기간 연장)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한정 (개선) 서비스 연장 대상자 전체로 확대, 자치구 재정 상황 및 대기자 현황에 따라 자율 결정	복지정책과

구 분	규제철폐안	주요 내용	담당부서
63호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선정 방식 변경	(기존) 자치구별 선발인원 배정 방식, 신청가능연령 만18~34세 (개선) 서울시 일괄 선발, 만18~36세(제대군인 복무기간만큼 연장)	돌봄복지과
64호	마곡지식산업센터 임대 상한 면적 규제 완화	(기존) 마곡 지식산업센터 내 1개 社 임대 전용면적 120㎡ (약 36.3평) 이하로 제한 (개선) 지식산업센터 임대면적 제한 완화	산업입지과장
65호	청년수당 해외결제 예외적 허용	(기존) 청년수당카드로 해외결제 불가하여 취업에 도움이 되는 AI 기반 생성형 어플리케이션 구입 불가 (개선) 응시로 등과 같이 현금사용을 통해 AI 앱 구입이 가능하도록 예외적 허용	청년사업담당관
66호	시니어 특화 과정 참여자 연령 제한 완화	(기존) 참여연령 만70세 이상 (개선) 참여연령 만65세 이상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다시가는캠퍼스 운영팀
67호	공공임대주택 주거 이동 기준 재정비	(기존) 주거 이동 기준 모호 (개선) 범죄피해보호, 하자보수 등 입주인 주거 안정에 필수적인 주거 이동항목 신설 등 주거이동 사유 명확화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주택공급부
68호	공익사업 추진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 개선	(기존) 보상액 관련 감정평가 3인중 1인을 시·도지사가 추천 ※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시·도지사 각 1인 (개선) SH가 사업시행자일 경우 감정평가사 추천 생략 가능	토지관리과장
69호	필름식 번호판 부적합 차량 무상교체 절차 간소화	(기존) (자치구) 원상복구명령서 발부 → (자치구) 번호판 재교부 신청 → (번호판 제작소) 번호판 무상교체 (개선) (자치구) 원상복구명령서 발부 → (번호판 제작소) 번호판 무상교체 ※ 구청 방문 생략	택시정책과장
70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직접 방문 업무 절차 개선	(기존) 업무 처리기간 10일, 폐업·재교부 대면신청 (개선) 절차 간소화하여 처리 기간 6일로 단축, 폐업·재교부 비대면 접수방식 추가	정보통신과장
71호	50플러스재단 프로그램 신청 서류 간소화	(기존) 중장년층 지원사업에 각종 행정서류 수기 제출 (개선)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으로 서류 제출 방식 전자화	서울시 50플러스재단 전략사업본부
72호	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 유희공간 활용	(기존) 청년취업사관학교 유희공간 미개방 (개선) 공실 공간 유관기관이 활용가능 하도록 개방	서울경제진흥원 교육본부
73호	시민대학 캠퍼스 내 대시민 개방공간 이용접근성 개선	(기존) 캠퍼스 내 개방 지정 공간 외 다른 공간 이용시 사전신청 및 사용료 납부 ※ 개방지정공간은 사용료 납부 없이 사용가능 (개선) 시민의 공간 이용 편의성 확대를 위해 개방 지정 공간 확대(5개 →11개)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증부권운영팀

구 분	규제철폐안	주요 내용	담당부서
74호	소상공인을 위한 입간판 규제 완화	(기존) 조례로 입간판 재료를 '비철금속'으로 규제 (개선) 재료를 '금속 등'으로 완화하여 특색있는 상권 조성에 기여	도시경관담당관
75호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 증명서 외부 부착규정 완화	(기존)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 증명서를 시설물 내·외부에 게시 (운영자증명서에는 이름, 얼굴, 사진, 생년월일 포함) (개선) 개인정보 보호 위해 운영자 증명서 시설물 외부 게시 사항을 제외	보행환경개선과
76호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자산 차감 기준 완화	(기존) 서울시 주거위기가구에 임차보증금 지원 시(최대 650만원) 현 거주지 보증금액을 차감한 후 지원 (개선) 보증금 인정액(350 / 450만원) 초과금액만 차감	돌봄복지과 서울시복지재단 고립예방센터
77호	와상 장애인콜택시 도입 및 정신적 장애인 단독탑승 제한 완화	(기존) 정신적 장애인 단독탑승 불가, 와상 장애인 콜택시 이용 불가 (개선) 정신적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른 단독탑승 허용, 와상장애인 특별수송수단 도입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운영처
78호	동행일자리 사업 대학생 신청 허용	(기존) 동행일자리 참여 대상에서 대학·대학원 재학생의 참여를 일률적으로 제한 (개선) 동행일자리 사업 지침을 개정해 대학·대학원 재학생의 참여 허용	일자리정책과
79호	서울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과정 개선	(기존) 장학생 선발시점에 가구소득 증빙 미확정 대상자는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소득기준 활용 자료 기준시점 확대 필요 (개선) 소득기준 활용자료를 당해연도에서 직전학기(전년)까지 확대	서울장학재단 사업운영부
80호	서울디자인재단 계약필수서류 제출 전자화	(기존) 협상에의한계약, 적격심사 신청서, 계약필수서류 방문·서면 제출 (개선) 협상에의한계약, 적격심사, 계약서류 모두 온라인 전자 제출 협상에의한계약 태블릿 이용한 전자평가로 전환 (제안서 책자 10부 제출 → 전자 제출)	서울디자인재단 경영본부
81호	MICE 지원금 지급절차 간소화	(기존) 1차) 여행사 → 차량회사·호텔 등 이용 대금 지급 2차) 서울관광재단 → 차량회사·호텔 등 지원금 지급 3차) 차량회사·호텔 등 → 여행사에 대금 반납 (개선) 서울관광재단 → 여행사 지원금 직접 지급	서울관광재단 국제관광· MICE본부
82호	청년사업 신청 증빙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	(기존) 여러 종류의 청년사업 신청시, 각각 사업마다 동일한 서류 반복 제출, 서류 준비 과정에서 불편함 발생 (개선)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일부 증빙서류에 대한 정보 공유 (예)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병적증명서 등	청년정책담당관

구 분	규제철폐안	주요 내용	담당부서
83호	양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기존) '89년말 양재대로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되었으나, 현행 자동차전용도로 구조, 시설 기준에 미부합. 버스입석운행 금지 등 규정 준수 못하는 시내버스 지속 운행 (개선) 양재대로 자동차 전용도로 해제	도로계획과
84호	손목닥터 9988 연령제한 완화	(기존) 손목닥터 9988은 청소년 이용이 제한, 19세 이상부터 가입 가능 (개선) 손목닥터 9988 가입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스마트건강과
85호	평생교육이용권 소득요건 폐지	(기존) 평생교육바우처 발급 대상에 기초수급, 차상위 등 소득 요건 부여 (개선) 1차 공고시 저소득 계층에 우선순위 부여, 대상자 적을 경우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신청접수 가능하도록 개선	평생교육과
86호	청년마음건강 상담파트너 위촉심사 절차간소화	(기존) 1년 단위 전문가 평가, 선발, 위촉 방식으로 운영 중 (개선) 출산, 육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위촉을 포기한 경우, 1차 서류전형을 면제하고 면접 심사만 운영하여 위촉 절차 간소화	청년사업담당관
87호	서울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 사업참여자 연령폐지	(기존) 사업 참여 연령 40~67세 (개선) 사업 참여 연령 상한선 폐지	평생교육과
88호	서울의료원 방문절차 개선	(기존) 요양기관 방문시 본인확인을 위해 대면 접수 창구 이용, 진료 수납을 위한 대기시간 만성 지연 (개선) 본인확인 전용 키오스크 구축, 빠른 수납을 위한 하이패스 무인등록단말기 구축	서울의료원
89호	DDP대관운영 절차개선	(기존) DDP 대관 신청 오프라인으로만 진행 (개선) DDP 대관운영 메인페이지 개선하여 온라인 상담 및 예약 가능하도록 개선	서울디자인재단
90호	마을버스 최대이용가능 시간완화	(기존) 최장 2시간 이상 달리는 노선이 있음에도 탑승 1시간이 지나면 기본요금(1,200원) 재부과 (개선) 마을버스 최대 이용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 불합리한 요금 재부과 철폐	버스정책과
91호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청소년확대적용	(기존) 청소년은 대중교통 기본요금을 약 40% 할인받고 있으나, 기후동행카드 할인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청년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불합리한 현상 발생 (개선) 만13~18세 청소년들도 청년과 동일하게 7천원 할인된 가격으로 30일권(55 / 58천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인 대상 확대	교통정책과

구 분	규제철폐안	주요 내용	담당부서
92호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 할인등록절차 폐지	(기존) 동주민센터에서 카드 발급 후 10일 이내 티머니 홈페이지에 별도 등록 필요, 미등록시 버스는 성인요금 부과 (개선) 발급과 동시에 별도 등록 없이 자동 등록 시스템화 도입	장애인복지과
93호	초등 긴급일시돌봄 제공시설 선정조건 폐지	(기존) '23년부터 29개 지역아동센터에서 급할 때 아이 맡아주는 초등학생 긴급 일시돌봄 서비스 제공 중이나 선정기준(종사자수, 규모 등) 제한으로 서비스 제공시설 부족 (개선) 희망하는 모든 센터로 선정기준 완화, 우리동네 키움포털 사이트 활용 온라인 시스템 구축, 이용자 수요에 따른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 등	아동담당관
94호	시장정비사업 허용대상 확대	(기존) 전통시장 공실률, 노후도, 유동인구 등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시장정비사업 허용 (개선) 주변 개발속도 및 상권활성화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구역 내 시장 추가 허용	도시정비과
95호	주차전용건축물 생태면적률 적용완화	(기존) 주차전용건축물 생태면적률 20% 이상 의무 확보 (개선) 주차전용건축물 의무 적용 제외	시설계획과
96호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절차 간소화	(기존)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 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거쳐 대상지 선정 (개선)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에서 대상지 선정 역할 수행으로 절차 간소화	공공개발담당관
97호	서울형 R & D 인건비 사용 범위 확대	(기존) 서울형 R&D 인건비 계상 한도 70% (개선) 서울혁신챌린지 및 신성장산업 분야에 한해 R&D 인건비 계상 한도 100%	경제정책과
98호	대환보증 보증료율 산정 방식 변경	(기존) 대환보증 취급시 기준보증료 1%, 가산보증료를 최대 0.3P (개선) 종전 보증의 보증료율, 최대 0.2P	소상공인정책과 서울신용보증재단
99호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절차 간소화	(기존) 문화예술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시 추가 서류 제출 및 사단법인 회원수 90명 이상 요구 (개선) 문화예술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시 불필요한 서류* 제외, 사단법인 회원수 70명 이상으로 허가 기준 완화 * 임원취임예정자의 특수관계부존재각서·가족관계증명서	문화예술과
100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사전절차 통폐합	(기존) 방침에 근거하여 심의 전 UD 사전컨설팅 운영 (개선) 사전절차 통폐합으로 심의 기간 단축 및 전문성 강화	디자인정책담당관

구 분	규제철폐안	주요 내용	담당부서
101호	공동주택수도요금 세대 분할 기준 개선	(기존) 단일계량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수도요금 세대분할 기준을 건축허가 호수로 규제 (개선) 공동주택 수도요금 세대 분할 기준을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수로 개선	요금제도과
102호	한옥 수선 등 비용 지원 절차 간소화	(기존) 공사 종료 후 비용 지원 완료 심의시 자치구 경유하여 접수 (개선) 서울시에 직접 심의 신청	한옥건축자산과
103호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 질 자율점검제 도입	(기존) 어린이집, PC방, 목욕장, 대규모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에 연 1회 방문 지도·점검 실시, 시설소유자등 자율관리 침해 및 규제 (개선)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이 자율점검 실시 후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시에서 현장점검 실시	생활환경과
104호	청년안심주택 반려동물 양육 및 출입금지 규정 폐지	(기존)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반려동물 양육시 입주자 동의 필요 문구를 명시하여 원칙적 금지사항으로 오해 소지 발생 (개선) (단기) 입주자 모집 공고문 변경하여 불필요한 오해 방지 (장기)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전략주택공급과 공동주택과
105호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	(기존) 기부채납하는 건축물에 대한 공공시설 설치 비용 산정시, 건축물 용도에 따라 설치비용 단가를 다르게 적용 (개선) 모든 종류의 건축물에 대해 동일한 설치비용 단가 적용 (건축비 외 설계비, 감리비 포함) ※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3-2-2, 3-2-3, 3-3-1 개정	도시계획 상임기획과
106호	설계공모 심사 제출물 디지털화	(기존) 자치구 설계공모 제출물 종이 패널 제출 (개선) 시비 투입되는 자치구 설계공모는 디지털 패널로 제출하도록 디지털 심사 확대	미래공간담당관
107호	여성발전센터 창업보육센터 입주 대상 제한 완화	(기존) '3년 이내 창업한 자' (완화) '7년 이내 창업한 자'	양성평등담당관
108호	화물운수종사자 교육방식 전면개편	(기존) 집합교육(기본편성) + 실시간 비대면 교육 (개선) 모바일 VOD 교육(기본편성) + 주말 집합교육(보충)	물류정책과
109호	소규모 지출집행 서류 간소화	(기존) 산출기초조사서 작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소액 집행시에도 작성·첨부함에 따라 소상공인 업무 부담 발생 (개선) 300만원 이하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인쇄물의 경우 산출기초조사서 작성을 생략하여 소상공인 업무처리 편의 및 행정 효율 증대	재무과

구 분	규제철폐안	주요 내용	담당부서
110호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시, 보안 SW 의무설치 폐지	(기존)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시 문서보안 SW 의무설치 (개선) 암호가 부여된 파일 제공 방식으로 변경	공간정보과
111호	지방세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일시적 해제	(기존) 체납자의 경제적 회복을 고려한 신용정보 등록 유예기간 및 해제 기준 부재 (개선) 경제활동 재개가 필요한 체납자의 경우 일부 납부 및 분납계획서 제출시 신용정보 제공을 일시적으로 해제	38세금징수과
112호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입주기간 개선	(기존) 자립생활주택 입주 후 최대 4년까지 이용 가능 (개선) 지역사회 적응 정도, 장애의 경중, 향후 주거대책 등을 고려하여 최대 거주기간 6년까지 차등 적용	장애인복지과
113호	주택가 공동주차장 보조금 지원기준 완화	(기존) 주차장 건설사업 보조금 지원 기준에서 주차장 확보율 산정시 '아파트' 제외 (개선) 주차장 확보율 산정시 '공동주택' 제외	주차계획과
114호	체육시설 관람권 검인규제 개선	(기존) 시립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전산을 이용하여 판매되는 관람권도 검인 및 폐기 절차에 소장의 확인을 받는 절차 존재 (개선) 전산 발행 관람권에 한하여 검인 및 폐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 신설	체육정책과
115호	정비사업 조합 직접설립제도 시비보조요건 완화	(기존) 조합 직접설립 추진 동의율(주민동의 50% 이상 75% 미만)과 시비 보조 요건(주민동의 75% 이상시 시비 60% 보조)이 상이 (개선) 조합직접설립 시 보조금 지원기준 동의율의 완화 등 제도개선안 마련	주거정비과
116호	서울청년센터 지역특화 사업비 제한 완화	(기존) 서울청년센터 운영사업 중 '지역특화 사업'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비 내 최대 20%까지만 편성할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제한 (개선) 서울청년센터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30%까지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개선	청년사업담당관
117호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비용 부담 완화	(기존) 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전액 자부담 (개선) 사업 특성, 규모, 보조사업자 재정 여건 등을 고려, 보조금 표지판 재질 등 기준 완화하여 보조사업자 자율성 강화	재정담당관
118호	뇌병변 장애인 신변처리용품 지원사업 신청서류 효율화	(기존) 사업 신청을 위해 5종의 서류 제출 *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일상생활동작검사서가 첨부된 진단서, 통장사본 (개선) 행복e음을 통해 관련 대상자 정보 확인 시, 일부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	장애인복지과

구 분	규제철폐안	주요 내용	담당부서
119호	여성발전센터 사회적배려대상자 신청 절차 개선	(기존) 사회적배려대상자의 직업훈련과정 강좌신청시 한정된 모집인원, 선착순 대면 접수 방식으로 인해 장시간 대기 후 접수 실패 등 시민불편 초래 (개선) 사회적배려대상자 교육신청절차를 온라인 접수로 개선	양성평등담당관
120호	행정심판 집행정지 통지 절차 개선	(기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었음에도 송달이 완료되지 않아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송달 절차 개선이 필요 (개선) 집행정지 결정 후, 결정 결과 문자를 발송하여 결정서 송달 전에도 청구인이 결과를 알 수 있도록 개선	법무담당관
121호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 합리화	(기존) 고액상습체납자 중 체납액의 50%를 납부한 시민은 공개 제외 대상임에도, 전자시보 방식으로 공개함에 따라 비공개 전환 불가 (개선) 구체적인 개인별 체납 정보는 수정, 변경이 가능한 서울시 누리집(위택스)에 공개	38세금징수과
122호	공공공사 계약금액 조정 '사전 기술 컨설팅' 지원	(기존)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계약금액 조정 순회점검' 방식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부당한 규제 인식 존재 (개선) 사후 점검 방식에서 계약설계 변경 전 사전 기술 컨설팅으로 제도 개선	기술심사담당관
123호	미개방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기존) 공공데이터 중 일부 데이터는 법률상 비밀, 보안 등 사유로 미개방 (개선) 미개방 데이터 현황 조사 후 익명 처리 등 통해 개방 가능한 데이터로 가공하여 제공	데이터전략과
124호	서울형키즈카페 평일이용시간 연장	(기존) 평일 서울형 키즈카페 17:30에 종료 (확대) 어린이집 하원시간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 18:00까지 조정	아이돌봄담당관
125호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비대면 서비스	(기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5년 이내)은 복지혜택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동주민센터나 퇴소한 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보호종료확인서'를 발급 (개선) '정부 24'에 구현이 되기 전까지 주요 사용처인 SH공사나 서울장학재단과 협력하여 서울시에서 자격조회 후 정보를 기관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협의 ※ 보호종료확인서를 정부24 온라인 발급 가능 건의 완료	아동담당관
126호	한강공원 그늘막 설치규제 완화	(기존) 한강공원 내 그늘막 설치 이용은 성수기(4월~10월)에만 가능 (개선) 시민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해 그늘막 설치 가능 기간을 3월~11월로 연장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

구 분	규제철폐안	주요 내용	담당부서
127호	청계천 반려견 동행 허용	(기존)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물동반 출입행위 금지 (개선) 청계천 반려동물 출입 시범사업('24.9.30.~'25.6.30.) 및 시민인식 조사 후 청계천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을 위한 조례 개정	치수안전과
128호	좋은 빛 위원회 심의 개선 반영	(기존) 건축물 등에 옥외조명 설치시 조명계획 심의 (개선) 심의대상 완화 및 심의 체크리스트 마련하여 신청자 부담 완화	도시경관담당관
129호	법인택시 교육장 주변 구인 활동 제한 폐지	(기존) 교통회관 등 인근에서 택시업체 구인활동 불가능 (개선) 법인택시조합 주관 자율 실시하되 위반시 제재	택시정책과
130호	조례로 정하는 공공기여시설 추가	(기존) 공공기여시설은 기숙사,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업무시설으로 한정 (개선) 저출산·고령화대책 지원시설, 공공지원시설 추가	도시계획과
131호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동의 방식 도입	(기존) 모아타운 주민제안을 위한 주민동의시 서면동의서만 인정 (개선) 모아타운 주민제안을 위한 주민동의시 서면동의서, 전자서명동의서 병행 가능	전략주택공급과
132호	시립청소년센터 수영장 여성 이용료 감면 연령 완화	(기존) 13~55세 여성의 시립청소년센터 수영장 이용료 10% 감면 (개선) 9~55세 여성의 시립청소년센터 수영장 이용료 10% 감면	청소년정책과
133호	시민-구민안전보험 중복 항목 제외 지침 완화	(기존)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 간 보장항목 중복 전면 배제 (개선)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 간 보장항목 중복 일부 허용(화재·폭발 등 대형 재난사고의 경우)	재난안전정책과
134호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자율 보수교육 운영 방식 개선	(기존) 집합교육 또는 실시간 온라인(ZOOM) 방식만 가능 (개선) 동영상(VOD) 교육 추가 도입, 시간·장소 제약 없이 자율 수강 가능	버스정책과
135호	택시운수종사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교육 운영 방식 개선	(기존) 집합교육 또는 실시간 온라인(ZOOM) 방식만 가능 (개선) 온라인 동영상 과정 별도 개설, 자율적 이수 가능 환경 조성	택시정책과
136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이수기한 완화	(기존) 온라인 수강 시 이수기한 15일 (개선) 이수기한 15일 → 30일로 연장	공동주택과

2. 현장민원담당관 규제철폐 공모 관련 업무보고

규제철폐 직원제안 운영 현황 보고

현장민원담당관:한휘진☎2180-8901 현장민원총괄팀장:김정열☎8902 담당: 박지영/김시환☎8903/8904

□ 사업개요

○ 추진방향

- 일상 속 규제철폐 아이디어의 제도화로 생생한 생활정치 구현
- 입법기관으로서 조례·규칙 제·개정 등 신속한 제도개선 결과 도출

○ 추진근거

- 일상 속 규제철폐를 위한 직원 제안 제도 추진 계획(의장방침 제202호, 2025. 05. 21.)
-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정책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7조

○ 주요내용

- 대 상 :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전 공무원
- 기 간 : '25. 6. 4 (수) ~ 7. 4 (금) 150
※ 필요 시 기간 연장 가능
- 주 제 : 규제철폐 관련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조례·규칙에 대한 제안

□ 추진계획

< 추진절차 >

구분	접수	분류	심사(1차)	선정(2차)	활용
역할	제안접수	기 제개정된 조례와 유사여부 검토 등	1차 심사(3배수)	대상 1, 최우수 1 우수 1, 장려 2	조례 규칙 제개정 안전상정
주체	직 원 ⇒ 현장민원담당관	현장민원담당관	심사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 10명 내외)	선정위원회 (시민권익위원회)	해당 상임위
시기	'25.6월초~7월초	'25.7월중순	'25.7월말	'25.8월초	회기시,수시

□ **제도의 필요성 및 목표**

- 불필요 규제: 시민 비용 및 시간 낭비 초래
- 규제 제정·운영: 시민 부담 최소화 지향
- 적절 규제: 공공성 유지 및 과도한 사적이익 방지 필수

□ **규제개혁의 이해**

○ **규제개혁의 정의**

- OECD 규제개혁 정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부규제의 품질(Regulatory Quality)을 향상시키는 과정

○ **규제철폐의 목표**

- 규제비용의 감소 및 행정편의 증진(행정절차 부담 경감 및 기간 단축)
- ※ 규제비용 : 준수비용(규제 준수 부담 포함) 및 기회비용(신기술·신산업 발생 불가, 소득·고용창출 기회 상실)을 합산

○ **여러 가지 규제철폐 방법**

- 불필요 규제(중복규제) 및 절차 폐지 또는 간소화
- 획일적 중앙규제를 하위기관의 분권형 규제로 전환(예, 대형마트 휴일지정)
- 부정 및 권한의 남용 가능성이 높은 모호한 규제의 투명화(예, 건축심의)
- 신규 영역(AI 등 신기술) 확장을 위한 기존 규제개혁
- 정책의 수요계층 확대

○ **규제철폐 시 유의점**

- 모든 규제철폐는 이해관계자간의 갈등과 역효과가 발생 가능하므로 규제철폐안은 갈등·역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함
- 규제는 현장에서 지킬 수 있어야 함(예, 화학물질관리법)

심사 기준표

항목	평가요소	배점
점수 합계		100점
창의성(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 기존의 방식과 차별화되어 참신하게 문제를 바라보는가 (독창성) 기존의 생각들을 잘 조합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변환하였는가 (융합성)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변화시켰는가 (융통성) 	
실현 가능성(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위법, 타 법령과 일맥상통하고 충돌하지 않는가 (법적충돌여부) 현재의 조직, 예산으로 행정 현장에서 적용하기에 무리가 없는가 (행정적 실행가능성) 현장에서 지킬 수 있나 (준수성) 	
효율성(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비용이 많이 감소하는가 (규제비용 감소효과) 만약 예산이 투입된다면 투입 대비 효용이 확실하게 높은가 (예산대비 효과) 	
적용 범위(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규제효과로 인해 영향을 주는 지역 범위가 국부적인가 아니면 광역 또는 전국 단위까지 확장 가능한가 (지역적 영향범위) 규제효과로 인해 도움을 받는 대상계층은 넓은가 (대상계층의 범위) 앞으로 타 기관, 중앙정부 등과의 협업으로 확장이 가능한 (확장가능성) 	
계속성·안정성(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효과로 인한 효과가 지속가능한가 (지속성) 조직·예산 등 모든 면에서 안정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가 (안정성) 	

규제철폐 시민제안 운영 현황 보고

현장민원담당관:한휘진☎2180-8901 현장민원총괄팀장:김정열☎8902 담당: 박지영/김시환☎8903/8904

□ 추진방향

-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 집중 신고 창구 운영
- 다양한 경로로 접수되는 시민 의견 검토 후 제도개선 과제 발굴
- 입법기관으로서 규제철폐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사항 발굴에 집중

□ 추진근거

- 일상 속 규제철폐를 위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 추진 계획(의장방침 제60호, 2025. 02. 11.)

□ 주요내용

- 규제 집중 신고 창구 ‘규제없소’ 로 접수된 제안 중 제도개선 과제 발굴

※ 「규제없소」 운영 개요

- 기간 : '25.3.17~
- 대상 : 일상 속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시민 제안
- 운영방법 : 의회신문고 관리자시스템에 연동하여 운영

- 의회신문고 접수 민원 중 규제와 관련된 사안 검토
- 의정모니터 지정주제(규제철폐 관련 제안) 접수의견 검토

□ 추진실적

- 규제없소 : 지하층 거실금지 조례 개정 제안 등 9건
- 의회신문고 민원 : 역세권 범위 조정 요구 등 6건
- 의정모니터 제안 : 자치구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처를 인근 자치구까지 확대요청 등 2건

□ 향후 일정

- 상시 제안 접수 및 사전검토 실시 : ' 25. 6월 ~

□ 주요 제안 내용

구분	유형	분야	시민제안	주요내용
1	조례 제개정	교통환경 안전	서울시 에코쉘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신설	(기존) 현행 서울시 조례상 에코쉘터 설치에 대한 내용부재 (제안) 에코쉘터 추가설치 가능토록 근거 조례 신설요청 (검토) 조례 제개정 시, 지자체별로 다른 스마트쉘터 설치 일률적 기준 마련. 버스승차대와 스마트쉘터 중복 투자 방지 가능. 실현가능성과 효용성은 있어 보이나 버스정책과는 안전문제로 부정적 입장
2	법령개정	건설 주택	국민주택 규모 제한 철폐 제안	(기존) 국민주택 규모 제한(전용 85㎡ 미만) (제안) 국민주택 규모 제한 철폐 → (현장민원과 수정제안) 전용 60㎡ 미만으로 국민주택 규모조정 (검토) 발코니확장 및 가구수 감소 등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60㎡ 미만으로 조정할 필요성 있고, 예산 절감 등 효과가 예상되나, 국민주택 규모와 연동된 세금, 복지 등 각종 타법 개정이 동시에 필요하여 실현하기가 어려움
3	법령개정	건설 주택 일반행정 /복지	장애자녀 양육하는 가정도 임대주택 혜택 주세요	(기존)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장애인 본인에게는 가점이 있으나, 장애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가점은 없음 (제안) '(중증)장애인 자녀' 가구를 위한 항목 신설 (검토) (중증)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는 경제적 부담이 크고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을 확률이 높으므로 임대주택 가점제도를 통해 지원할 필요성 있음
4	조례개정	일반행정 /복지	독립유공자 유가족도 공영주차장 할인 받을 수 있게 조례개정요청	(기존) 독립유공자는 본인에 한하여 공영주차장 할인 (제안) 독립유공자 유가족에게도 공영주차장 할인을 확대 (검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예우의 기본 이념)에 따라 그 유족에게도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 강남구, 과천시의 유족 주차요금 할인 사례에서 볼 때 서울시 조례 개정을 통한 형평성 확보 가능

구분	유형	분야	시민제안	주요내용
5	법령개정	일반행정 /복지	지하도상가 임대료 감면	<p>(기존) 현행 공유재산 시행령에서는 1차년도에 대부료율이 고정되어 임대차기간(5년) 간 변동이 없도록 규정됨</p> <p>(제안) 대부료 계산식에서 고정되어있는 대부료율을 필요 시 매년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변동가능하도록 조정</p> <p>(검토) 경기불황 등 특수한 상황에서의 상가 임차인의 재정적 부담을 감정평가를 통하여 신뢰감 있도록 완화 가능.</p>
6	법령개정	일반행정 /복지	학교밖청소년지 원센터 꿈드림 연령제한 연장요청	<p>(기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령제한은 24세</p> <p>(제안) 장애인 또는 필요시 연령 제한 연장 가능토록</p> <p>(검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단서조항을 추가함으로 지적정서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 기본법의 청소년 연령인 24세 이후에도 지원센터 혜택이 가능함</p>
7	조례 제개정	일반행정 /복지	자치구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처를 인근 자치구까지 확대 요청	<p>(기존)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구에서만 사용 가능</p> <p>(제안) 자치구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처를 인접 자치구로 확대</p> <p>(검토) 해당 자치구 내 지역경제 활성화의 취지가 훼손됨에도 불구하고, 수요자인 시민의 편의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임</p>
8	조례개정	일반행정 /복지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요청	<p>(기존) 비무장지대 고엽제휴유증 환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근거 부재</p> <p>(제안)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4항에 비무장지대 고엽제휴유증 환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p> <p>(검토)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들의 공훈을 선양하고 예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존재</p>

3. 도시공간본부 소관 규제개혁 관련 업무보고



제 3 차 규 제 개 혁
특 별 위 원 회

주요 업무 보고

2025. 9. 5.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본부

①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 추진

※ 참고자료 별도 제출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 추진

도시계획과장 : 이광구 ☎2133-8305 공항권역계획팀장 : 김형식 ☎8307 담당 : 백명선 ☎8308

공항고도제한관련 ICAO 국제기준 변경과 연계하여 김포공항일대 고도 제한을 완화하고 도시공간 개선

□ 추진배경

- 국제민간항공기구(이하 ICAO)가 개정한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이 '25.8.4. 발효되었고, '30.11.전면 시행 전 국내 공항별 고도제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 ICAO 이사회 의결('25.4) → 개정안 발효(8.4) → 국내기준 마련(현재) → 시행('30.11)

개정 초안 마련	회원국 의견조회	이사회	개정안 발효	시행
2023.5. ▶ ICAO TF, 항행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개정 초안 마련	'23.6.9.~10.30. ▶ 우리나라 등 회원국(193개국) 의견 조회 실시	'25.3.10.~4.4. ▶ 회원국 의견수렴 및 추가 검토 통해 수정안 채택	2025.8.4. ▶ 과반수 이상 반대의견 미제출시 개정안 확정	2030.11. ▶ 각국 준비기간을 거쳐 '30.11월 전면시행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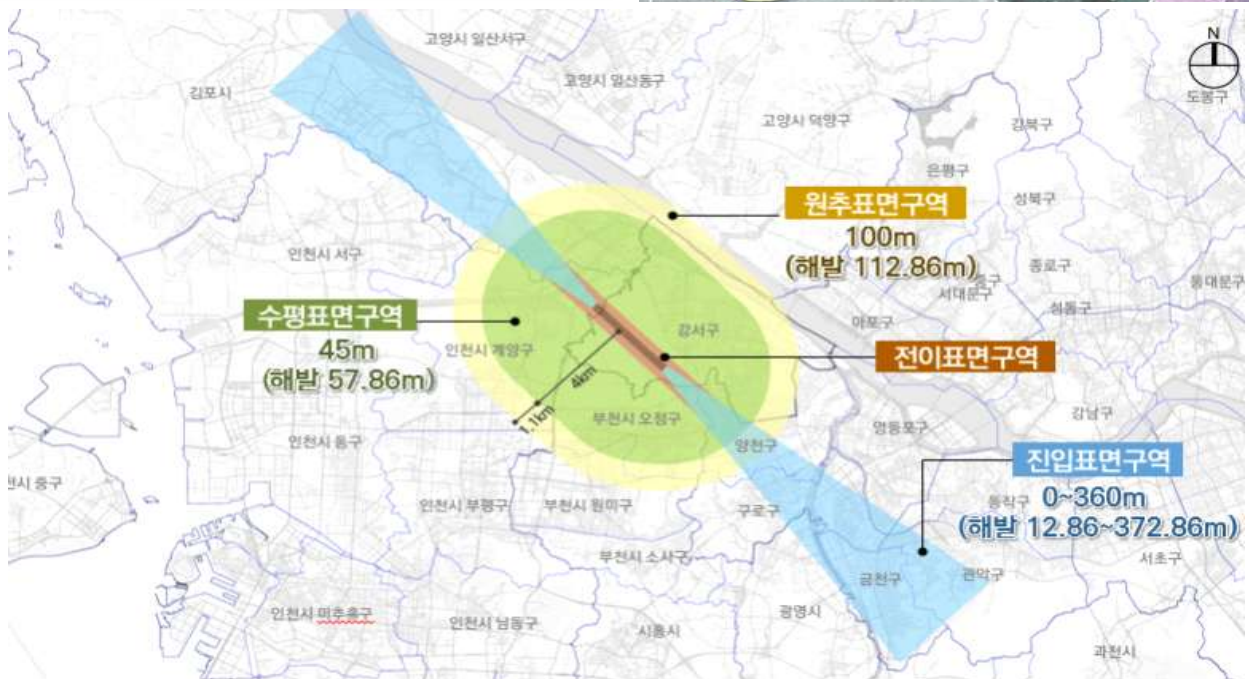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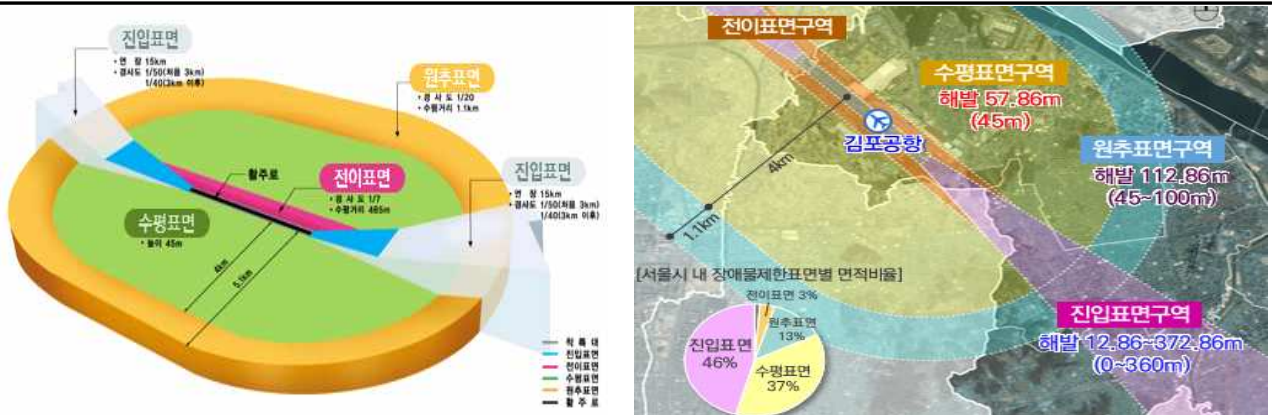
□ 추진경과

- '23. 9.17. : 서울시장-ICAO 의장(몬트리올) 면담
- '24. 3.~ :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TF 구성·운영(총 4회 개최)
- 구성 : 서울시, 강서구, 양천구, 계약구, 김포시, 부천시, 공항공사, 협회 등
- '25. 3.~4.4. : ICAO 이사회 개최(장애물제한표면 개정안 채택)
- '25. 7. 16. : ICAO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市 → 國)
- 기존보다 강화되지 않도록 평가표면(OES)의 적용범위 축소 및 고도제한 높이 완화 필요
- '25. 7. 24. : 관계기관 회의 개최(국토부 공항운영과, 市도시계획과, 자치구)
- 국토부는 국내기준 적용 시, 지자체 및 전문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입장임
- '25. 8. 1. :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ICAO국제기준 국내적용 시 고도제한 완화요청)
- 건의사항: 항공안전 확보를 전제로 비행절차, 주변지형, 기존 비행금지구역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도 제한 등 규제적용 범위에 대한 현실적인 조정 반드시 필요
- '25. 8. 4. : ICAO 국제기준 개정안 발효

□ 김포공항일대 고도제한 현황

- 근거법령 : 공항시설법 제34조 ※ 군 비행장은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적용
- 공항시설법상 장애물 제한표면¹⁾ 적용 지역 : 80.03km² (서울시 13.2%)

구분	면적 (㎡)	관리대상	규제내용
전이표면	3,097,000	활주로 및 이륙시 경사면	45m (해발57.86m)
진입표면	33,204,000	이착륙시 비행기의 진입을 위해 설정	0~360m(3층~93층) 해발 12.50~372.86m 미만
수평표면	29,129,000	착륙시 지상의 이상유무 확인을 위한 공중선회 구역	45m(14층 미만) 해발 57.86m 미만
원추표면	12,804,000	수평표면을 보호하고 항공기의 안전이동을 위해 설정	45~100m (14층~28층) 해발 57.86~112.86m 미만



現국내 장애물제한표면

1)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지형·물 등을 말한다)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표면

□ ICAO 新공항고도제한 국제기준 주요내용

- 개정된 ICAO 국제기준은 기존 장애물 제한표면에 비행절차 보호구역 (정부운영)등 항공기 항행 현황을 통합하여 작성됨
 - 고도제한은 위치에 따라 현재보다 범위가 축소 및 확대, 높이도 강화 및 완화됨
- ① (新국제기준) 現장애물 제한표면 ⇒ '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
 - 금지표면은 現제한표면보다 축소(184→35.2km²), 평가표면* 확대·신설(458km²)
 - * 평가표면의 경우 각 회원국의 공항여건 및 비행절차 등을 고려하여 축소·조정 가능
- ② (항공학적 세부기준) 평가표면 고도제한 예외 적용을 위한 핵심 절차(준비 중)
 - 개정 초안 공개 ('25.下) → 체약국 의견수렴 및 이사회 의결 → 세부기준 공포 ('26.下)

□ 쟁점사항

- 개정된 ICAO 국제기준은 현재보다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표준 고도제한 높이가 강화되어 개정안의 국내 적용 시 **항공안전을 전제로 지역 실정 및 비행절차를 고려한 조정 필요**

□ ICAO 국제기준 효력

- 개정된 ICAO 국제기준은 각 체약국에서 자국 공항 특성에 맞게 자율 적용 가능한 권고사항이나, 공항별 적용 현황을 ICAO에 통보 및 항공정보간행물 (AIP)에 등록 필요
- 국제기준과 차이가 클 경우 ICAO에서 실시하는 항공안전 관리체계에 대한 항공안전 상시평가(USOAP-CMA)에 불리
 - 항공안전 상시평가 실시사유: ICAO 회원국의 항공안전도를 다양한 위험지표로 활용되며, 낮은 등급 판정 시 노선취항 제한 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

□ 관계기관 동향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 확보를 전제로 국토부 독단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서울시를 포함한 인근 지자체 및 전문가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임
- (강서구) 고도제한 완화(수평표면 45m→80m) 요청('24.9.), ICAO 방문('25.6.25.)
- (양천구) ICAO 개정안 강력 반대 구청장 성명 발표('25.7.15)

□ 서울시 입장

<국토부 건의사항>

- 항공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보다 평가표면 범위, 높이가 강화되지 않도록 고도제한 기준 설정
 - 항공운항 안전 확보 전제하에 장애물평가표면(OES) 합리적 설정
- 항공학적검토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등 주민부담 최소화 방안 제시

<TF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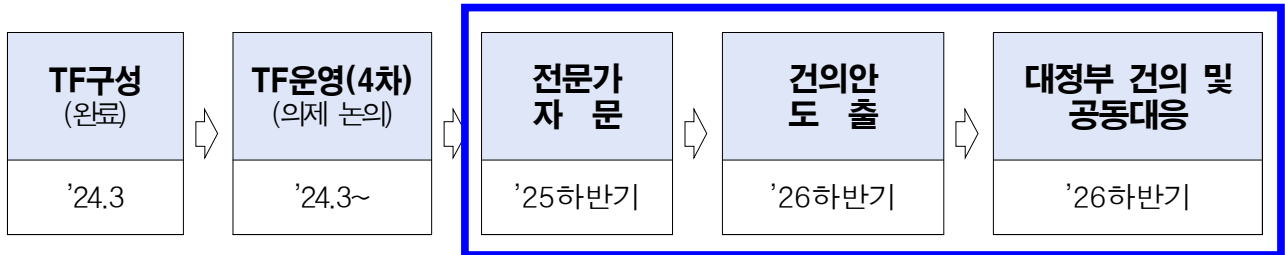
- ICAO 개정안의 국내 적용 시, 기존보다 규제가 강화되지 않고 주민부담 최소화하는 것이 기본 원칙임
-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관련하여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통일된 합리적 기준 (안)을 마련되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국토부와의 긴밀히 협조 중
 - TF구성 : 서울시, 강서구, 양천구, 계양구, 부천시, 김포시, 한국공항공사, 전문가(항공교통관제사협회, 민간항공조정사협회)

< 관계기관 회의 개최 >

- 일 시: 2025.7.24.(목) 10:00
- 참석자: 국토부 공항운영과, 서울시 도시계획과, 자치구(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 주요내용: 재산권 보호와 항공안전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해 국토부-서울시-자치구가 공동 대응에 합의

□ 향후계획

- 서울시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TF 지속 운영 및 간담회 개최('24. 3~)
 - 고도제한 완화 건의안의 관계지역 의견수렴 및 공동건의 등 정부 수용성 증대 도모
 - TF구성 자치구 등과 공동대응 (양천구, 강서구, 계양구, 부천시, 김포시)



※ 건의안은 항공학적 검토 세부기준이 확정('26.下)된 이후 최종 도출 예정이며, ICAO의 항공학적 검토 세부기준 의결 및 공포 전까지는 개정된 ICAO국제기준과 김포공항의 비행운항 절차등을 고려하여 국토부와 국내 적용(안)미련에 대하여 지속적 협의 추진

4. 디자인정책관 옥외광고물 규제 관련 업무보고

동행·매력
특별시서울

제 5 차 규 제 개 혁
특 별 위 원 회

SE♥UL M! SOUL

주요 업무 보고

2025. 12. 16.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관

① 옥외광고물 규제철폐 추진현황

② 옥외광고물 민원현황 및 개선 검토보고

1

옥외광고물 규제철폐 추진현황

도시경관담당관 : 정삼모 ☎2133-1920 광고물팀장 : 정성중 ☎1939 담당 : 김혜경 ☎1934

□ 추진 배경

-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간 형평성 제고
- 자치구 및 산업계의 현실적 요구와 규제개선 요청을 반영하여 도시미관 개선과 옥외광고산업 진흥의 균형 도모

□ 추진내용

① (59호) 옥외광고물 적색류, 흑색류 사용제한 금지

- 서울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2조 제3항 제4호 삭제('25.5.19)
- 간판 바탕 색채를 적색류와 흑색류의 사용을 2분의 1(50%) 이내 제한 규정 삭제
- 소상공인들이 간판 디자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통해 효과적인 홍보로 매출 증대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음부즈만을 통해 접수된 산업계의 규제개선 요청 수용

* 우리시를 포함한 5개 시도는 규제조항 삭제, 12개 시·도는 규제 유지

② (60호) 모든 자치구의 가로영상문화시설에 대해 광고물 표시 허용

- 서울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10조 제1항 제2호 개정('25.5.19)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중 가로영상문화시설의 단서 조항 변경(디자인서울거리 조성 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에 한정한다 → 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에 한정한다)
- 강남구에 한정된 규제를 삭제하여, 자치구 간 형평성 제고

※ 서초구로부터 미디어폴 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 정비 요청 수용

③ (61호) 창문 이용 광고물 규제 완화

- 서울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17조 제2항 제2호 삭제('25.5.19)
- 창문을 이용한 전광류(동영상 변화가 없는) 사용 광고물을 '상업지역 건물 1층'으로 제한한 규정 삭제
- 주거지역에 위치한 부동산 중개소에 전광류로 부동산 매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 부동산 거래 활성화 지원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부동산 온·오프라인 광고용 디지털 사이니지) 성과에 따른 조례 정비

④ (74호) 소상공인을 위한 입간판 규제 완화

- 서울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9조2 제1항 제6호 개정('25.5.19)
- 입간판 재료 변경(비철(非鐵)금속 → 금속 등)
- 소상공인들이 95% 사용하는 금속 입간판을 합법적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하여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 정비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신문고로 규제완화 건의 수용

⑤ (157호) 쌍둥이형 건축물의 간판 설치 기준 현실화

- 서울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4조 제1항 제8호 개정('26년 상반기)
- 쌍둥이형 건축물은 자치구 옥외광고심의를 거친 경우 개별 동별로 간판 설치 가능
- 쌍둥이형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 조례 적용시 건축물대장 상 '하나의 건물'로 간주돼 3면만 간판 설치가 가능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기업의 정당한 표식권 강화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신문고로 규제완화 건의 수용

2

옥외광고물 민원현황 및 개선 검토보고

도시경관담당관 : 정삼모 ☎2133-1920 광고물팀장 : 정성중 ☎1939 담당 : 김혜경 ☎1934

□ 민원현황 및 검토보고

시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접수민원(4건)

① 가로형 간판 층수 제한 완화

- 관련규정 : 서울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 문제점 : 현재 가로형 간판은 건물 5층 이하에 설치할 수 있으므로 6층 이상의 업소는 상대적으로 업소를 홍보하는데 제약이 따름
- 건의사항 : 가로형 간판의 설치에 대하여 건물 5층 이하를 7층 이하까지로 완화하여 주기 바람
- 검토의견

- ▶ 가로형 간판 층수 완화는 도시경관 및 안전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필요
- ▶ 자치구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조례 개정 여부 검토하여 추진

② 입체형 간판 세로 크기 확대

- 관련규정 : 서울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4조 제1항 제6호
- 문제점 : 현재 입체형간판의 세로 크기가 45센티미터 이내인데 판류형간판의 80센티미터에 비해 너무 작고 위층으로 갈수록 더 작아 보이는 문제가 있음
- 건의사항 : 입체형간판의 세로 크기를 70센티미터로 완화하여 주기 바람
- 검토의견

- ▶ 시인성 확보 필요성은 인정되나, 도시경관 및 안전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필요
- ▶ 자치구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조례 개정 여부 검토하여 추진

③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 수정 보완

- 관련규정 : 서울시고시 제2017-490호(특정구역에서의 표시제한 사항)
- 문 제 점 : 디지털 광고물 설치의 예외 규정의 완화가 필요
- 건의사항
 - 표시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인 네온, 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의 예외인 ‘왕복 8차로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경우’ 를 ‘왕복 8차로 이상 또는 (대로 2류 30m 이상)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경우’ 로 수정하여 완화
- 검토의견

- ▶ 예외 규정에 ‘대로 2류 30m 이상’을 추가할 경우, 표시제한을 받는 특정구역 중 50%(155/309)가 제외되어 고시 본연의 의미(디지털 광고물 난립 예방)가 퇴색
- ▶ 다만, 현재 본 고시 변경 중(행정예고 완료)에 있으며, 변경 내용 중 예외 규정 변경(왕복 8차로 이상 → 도로 폭 40m* 이상)도 포함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광로 이상(40m) 준용

④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 개정 건의로 설치 허가 절차 간소화

- 관련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 문 제 점 : 수십 년간 면제해 오던 규제가 최근 강화되어, 광고물 허가 외에 공작물 축조 신고까지 이중 규제가 발생
- 건의사항 : 이미 옥외광고물 심의·허가를 거친 시설에 대해 공작물 신고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법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이중 규제 개선
- 검토의견

- ▶ 법제처에서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허가·신고를 받은 광고물의 경우에도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법령해석('24.6.5.)
- ▶ 현장에서의 혼선과 사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안부에서 ‘옥외광고물 공작물 축조신고 관련 조치방안’ 시달('25.12.1) 및 '26년 관계법령 개정 추진

서울시 응답소 접수민원(2건) ※ 정당현수막 관련

⑤ 왜곡된 내용의 현수막 제작 및 금지 요청

- 관련규정 : 옥외광고물법 제5조 제2항
- 문 제 점 : 옥외광고물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도시미관 또는 국민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 건의사항 : 무분별한 옥외광고물 난립방지를 위해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광고물*’ 내용금지의 경우 엄격한 법 적용 필요
 - * 범죄행위, 미풍양속 위해, 청소년보호, 사행심 유발, 인권침해, 타법광고 금지 등
- 검토의견

▶ 행안부에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내용금지)의 구체적인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25.11.18)하여 자치구에서 시행중

⑥ 난립하는 정당현수막 적극 대응방안 마련

- 관련규정 : 옥외광고물법 제8조
- 문 제 점 : 최근 상대 정당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게시난립 등으로 도시미관 저해 및 국민정서에 반하는 혼란 야기 등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 건의사항 : 정당현수막 표시·설치 기준* 등 위반 정당현수막에 대해 강제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구체적인 법규정 마련
 - * 읍·면·동별 설치 개수(2개), 설치 규격(10㎡이내), 기간(15일) 등
- 검토의견

▶ 불법 현수막 단속권한은 자치구청장에게 있어 정당현수막의 위법여부는 자치구에서 판단하며, 통상적인 정당활동 해당여부는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

▶ 행안부에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내용금지)의 구체적인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25.11.18)하여 자치구에서 시행중

ICAO 국제기준 발효에 따른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의 합리적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	--

제안년월일 : 2026년 04월 20일

제안자 : 규제개혁 특별위원장

1. 주 문

- 정부는 2030년 11월 전면 시행 예정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국내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항공 안전을 전제로 하되 김포공항 주변의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의 위축과 재산권 제약 실태를 고려하여 현행보다 규제가 강화되지 않도록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전문가·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최소침해 및 신뢰보호 원칙을 준수하는 한편,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절차적 장치를 마련 할 것을 촉구함.

2. 제안이유

가. 2025년 8월 4일 발효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사항이 2030년 11월 전면 시행될 예정임.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나. ICAO의 개정된 국제기준은 기존 장애물 제한표면 체계를 ‘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여 항행 현황을 통합적으로 반영하도록 재편하였음. 그러나 국제기준이 평가표면의 확대·신설을 전제로 설계됨에 따라 국제기준의 국내 적용 과정에서 규제적용 범위와 표준 고도제한이 오히려 강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다. 특히 김포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고도제한이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주변 지역의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 등에 지속적인 제약이 있었음.

라. 이와 같은 여건 등을 고려하여 ICAO 국제기준의 국내 적용 기준은 항공 안전 확보를 전제로 하되, 기존보다 고도제한 규제가 강화되지 않도록 김포공항의 지형적 특성, 비행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마.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정부 및 관계기관이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에 관한 국내기준 마련 과정에서 최소 침해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신뢰 보호의 원칙을 준수하여,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의 위축 없이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공항시설법」 등

나. 기타사항 :

4. 이 송 처

○ 대한민국 국회, 대통령실, 국토교통부

ICAO 국제기준 발효에 따른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의 합리적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2025년 8월 4일 발효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사항이 2030년 11월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내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ICAO의 개정된 국제기준은 기존 장애물 제한표면 체계를 '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여 항행 현황을 통합적으로 반영하도록 재편하였다. 그러나 이 기준이 평가표면의 확대·신설을 전제로 설계됨에 따라, 국내 적용 과정에서 규제 적용 범위와 표준 고도제한이 오히려 강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포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고도제한이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 추진에 지속적인 제약이 발생해 왔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ICAO 국제기준의 국내 적용 기준은 항공안전 확보를 전제로 하되 기존보다 고도제한 규제가 강화되지 않도록, 김포공항의 지형적 특성과 비행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2025. 8. 4. 발효)의 국내기준 마련 과정에서 항공안전 확보를 전제로 최소 침해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신뢰 보호의 원칙을 준수하여,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이 위축되지 않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내기준 마련 과정에서 ICAO 개정 체계상 평가표면이 국내 공항 여건 및 비행절차에 따라 조정 가능함을 적극 활용하여, 최소 침해 원칙을 반영한 평가표면 기준을 마련하라.

둘. 정부는 국내기준 마련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및 인근 지자체, 항공안전·도시계획 전문가와의 공개적·실질적 협의 체계를 제도화하라. 아울러 항공학적 사전검토 제도 등 절차적 지원 장치를 마련하여 주민에게 충분한 설명과 의견수렴 기회를 보장하고,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재산권 침해를 예방하라.

셋. 정부는 신뢰 보호의 원칙을 준수하여 기존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존중하고, 김포공항 주변 지역의 도시정비가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이행하라.

2026. 04. 20.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일동